

##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223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연구학술용역으로 함 (안 제3조).
- 나.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 (안 제4조).
- 다. 위원회는 학술용역에 대하여 과제선정,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5조).
- 라.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안 제10조).
-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1,700천원(年)

- 위원회 참석수당 : 70,000원×5명 × 2회 = 700,000원
- 위원회심의수당 : 100,000원×5명 × 2회 = 1,000,000원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4. 3. 15 ~ 2004. 4. 3(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므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법령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써, 용역비(예산액)가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①학술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과 관계 전문가 및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적인 사무를 주관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예산편성 등)** 시장은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일비외에 심의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23
----------	------

제안년월일 : 2004. 5. 15.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용역의정의 및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용역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용역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용역의 정의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을 포함시킴.(안제2조)
-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원이상, 연구·학술용역과제는 1천만원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함.(안제3조)
- 위원회 위원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하고 시의원 3명을 포함시킴.(안제4조)

#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5억원 이상
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제4조제1항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과”를 “기획경제국장, 시의원 3명 그리고”로 한다.

제5조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용역과 제의 심의대상은 법령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써, 용역비(예산액)가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으로 한다.</p>	<p>제3조 (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li> <li>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li> <li>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li> </ol>
<p>제4조 (위원회) ① <u>학술용역</u>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과 관계 전문가 및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4조 (위원회) ① <u>용역</u> ..... ..... .....</p> <p>②~③ (원안과 같음)</p> <p>④ ..... <u>기획경제국장, 시의원 3명 그리고</u> ..... .....</p>
<p>제5조 (기능) 위원회는 <u>학술용역</u>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li> <li>2.~3. (생략)</li> </ol>	<p>제5조 (기능) ..... <u>용역</u> ..... ..... .....</p> <p>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p> <p>2.~3. (원안과 같음)</p>